

의안번호	제579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417회)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29일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9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1. 개정이유

-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대학생·고등학생’으로 국한된 모집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
-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제한된 모집 대상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청년
기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행정운영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학생·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아르바이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청년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취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청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을 “청년”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를 “일정기

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출한 다”를 “제출한다”로 한다.

제7조 중 “학생은”을 “근무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 <u>대학생·고등학생 아르바이트</u>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대학생·고등학생 아르바이트</u> (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u>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도정에</u> <u>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u> <u>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u> <u>말한다.</u></p> <p>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u>학생</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u>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u> <u>조례</u></p> <p>제1조(목적) ----- -- <u>청년아르바이트</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u> <u>같다.</u></p> <p>1. “<u>청년아르바이트</u>”(이하 “아 <u>르바이트</u>”라 한다)란 <u>청년이</u> <u>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u> <u>이해하고, 사회경험 취득과 가</u> <u>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u> <u>말한다.</u></p> <p>2. “<u>청년</u>”이란 「<u>청년기본법</u>」 <u>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u> <u>34세 이하인 사람</u>을 말한다.</p> <p>제3조(대상자) ----- <u>모집대</u> <u>상</u>-----</p>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는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생 략)

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

1. -----

----- 청년

2. -----
----- 청년

제4조(운영시기) ① -----
-- 일정기간 동안 -----

-----.

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한다.

제7조(근무지) ----- 근무자
는 -----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

관련법령 발취

□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등에 따라 학력에 따른 모집 대상 제한 폐지
-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청년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정비

2. 비용 발생 요인

-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모집인원 및 운영 횟수(120명, 연 2회)는 현행 유지, 지급단가는 생활임금 평균 증가율(5.3%) 반영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1,542,512천원

※ '25년 기준 : 96,350천원 × 24일 × 120명 = 277,488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아르바이트 보상금	277,488	292,195	307,681	323,988	341,160	1,542,512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은영